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3. 7. 9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6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6월 23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96회(정례회) 제3차 위원회(2003년 7월 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계정근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길역사 옆 유희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로자 지방제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차장 건설계획
 -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54-2 외 9필지
 - 대지면적 : 1,263㎡
 - 건설규모 : 1,161㎡(평면철골식 1층)
 - 주차면수 : 47면
 - 건 설 비 : 8억원(전액 구비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태성)

- 건설예정지 주변은 신길역, 강남아파트, 단독주택, 다가구·다세대 주택 및 일부의 상가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,
- 반경 300m 권역 내 차량 등록대수가 총 961대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주간 312대, 야간 563대의 차량이 이면도로 상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
- 건설예정지가 역세권에 위치하여 외부인이 이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동 지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없는 지역으로 타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(안)

의 안 번 호	54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6. 20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희부지에 평면 주차장을 건설 운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주차장 공사계획
 - 위치 : 영등포구 신길동 54-2 외
 - 면적 : 1,161㎡, 평면 약 47면
 - 건설비 : 800백만원(구비)

3. 구유재산 관리계획

- 매입 : 1건
- 주차장 : 1,161㎡

따로붙임 : 1. 2004년도 매입대상 재산목록 1부
 2.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 1부
 3. 매입재산 현황 1부. 끝.

신길역사 옆 유희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건설계획

1. 재산의 표시 및 토지소유자

재 산 의 표 시			매입대상 면적	소 유 자		비 고
소 재 지	지 목	면 적		주 소	성 명	
신길동 54-2 외	전 도로	1,161㎡	1,161㎡	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-1	영등포구	

2. 재산관리 현황

관리상태(현 용도)	토 지 의 특 성	비 고
평면 주차장	일부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역	

3. 주차장 건설 사유

- 신길역사 옆 도로사면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변 주택가 및 지하철 신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보행권을 확보하여 유휴토지에 대한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4. 매입(주차장) 예정가 : 800,000천원(주차장특별회계)

연도취득대상재산목록(6-2)

회계명 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 표시			면적 및 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구분	지목	소재지					
계	매입 (기타)	전 도로	신길동 54-2 외	1,161m ² 800,000	2003.12월 (4/4분기)	주차장 건 설	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-1 영등포구 외	주차장 건 설
1	매입 (기타)	전 도로	신길동 54-2 외	1,161m ² 800,000	2003.12월 (4/4분기)	주차장 건 설	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-1 영등포구 외	주차장 건 설

(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
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
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
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6-4”를 참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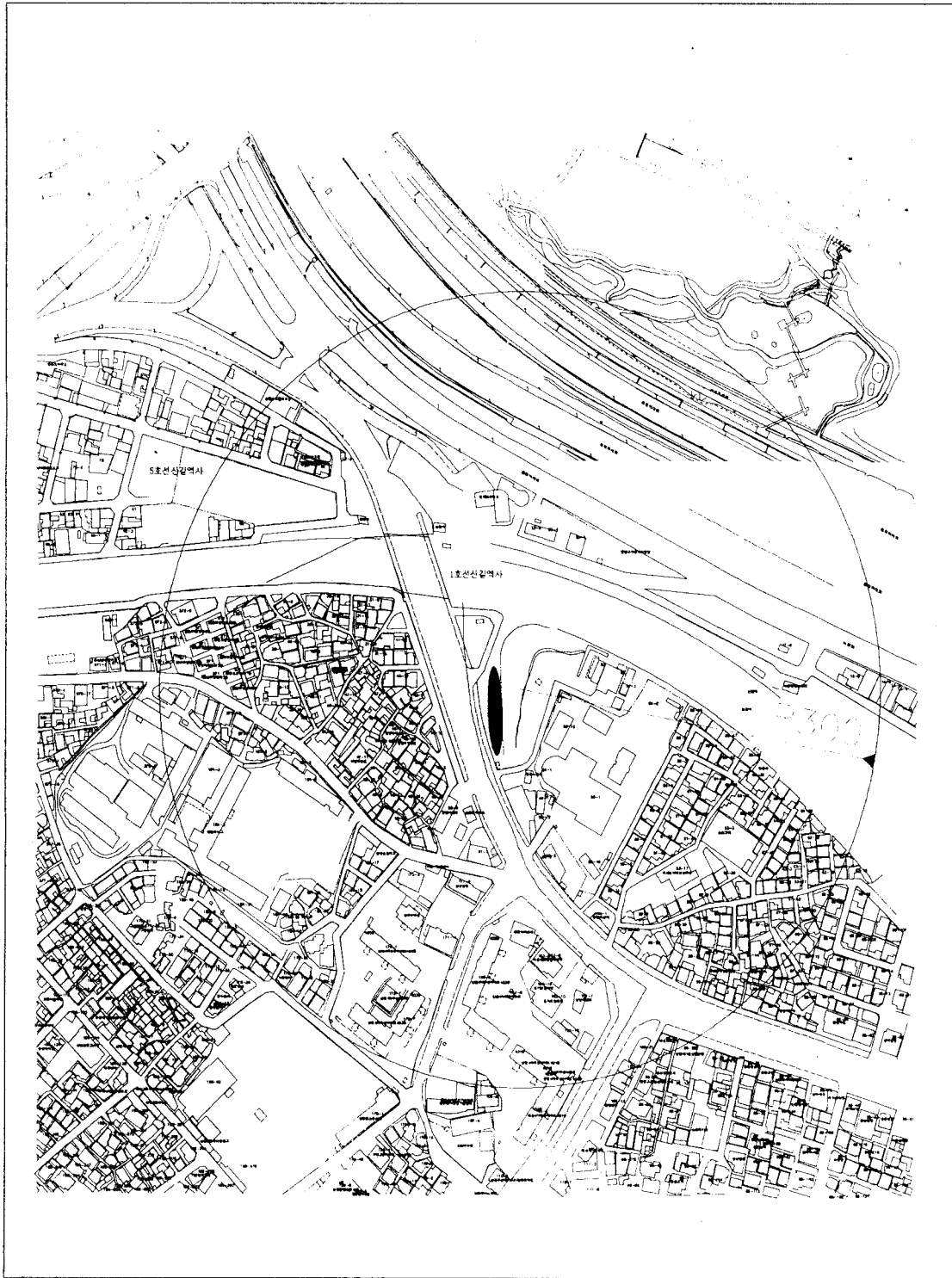
구유재산관리계획(총괄)

회계명 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 토지 건물 기타				1	1,161	800,000	1	1,161	800,000	
	1. 매 입 토지 건물 기타				1	1,161	800,000	1	1,161	800,000	
	2.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계 토지 토지 기타										
	4. 매 각 토지 토지 기타										
	5. 양 여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및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	

주차장 건설부지 위치도



현 장 사 진

○ 신길동 54-2 외 신길역사 옆



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견

의 안
번 호

56

제안년월일 : 2003. 7. 9

발 의 자 : 박남오의원외 11인

1. 조사의 목적

-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및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, 병원 등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중이용시설물의 편리성, 안전성을 도모하고
- 인터넷 “구청장에게 바란다” 및 진정서 처리실태 등 민원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